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3.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유재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맞게 변경하고, 서면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정비(안 제4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 상향(안 제5조제2항제3호)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 5천만원 이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3항)

- 1건당 기준: 취득 20억원(6천㎡), 처분 10억원(5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로 명시(안 제61조 제3항)
- 공유재산 등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5. 검토의견

- 안 제4조제3항, 제4항, 제8항(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임기 정비 및 서면심의 근거 신설)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민간위원 연임관련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조례에는 제4조제6항에서 대면심의 근거 규정만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심의회의 대면 개최가 어렵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상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개정을 통해 서면심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안 제5조제2항제3호(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 상향)
 - 기존 공유재산심의 생략 기준 3천만원은 201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제정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충북지역 평균 공시지가변동률(총 64.25% 상승)을 반영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함.

- 심의 생략 기준 상향을 통해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조치는 타당함.
- 안 제12조제3항(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기준 마련)
 - 시행령 제7조제1항 중요재산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1건당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개정으로 타당한 조치임.
- 안 제61조제3항 신설 (수급자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 구체적 명시)
 -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최초 납부기한부터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변상금 유예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시행령과 조례의 일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
- 안 제66조의2 신설(공유재산 등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규정 신설)
 -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증감 현황 공개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여 도에서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신설 조항이라 판단 됨.

붙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